보건복지부 공고 제2026-907호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전문위원 채용 공고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소속 전문위원(기간제)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6년 11월 23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1 채용 개요

채용 분야	선발예정 인원	계약기간	직무내용	근무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전문위원 '나'급 (기간제)	1명	계약체결일 ~ 1년*	○ 사회보장위원회·실무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의 검토 및 분석 지원 ○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업무 지원 ○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등 제도 조정에 관한 사항 ○ 그밖에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소관 업무 수행	정부세종청사

* 휴직자의 조기복직, 휴직연장 등에 따라 계약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2 응시자격

□ 공통 자격

○ 20세 이상인 자로 공고일(2026.11.23.) 기준 인사관리 규정상 정년(60세)에 도달하지 않은 자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근로자 등 공정채용 기준」상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보건복지부 훈령 제300호)

[참고] 공정채용기준 상 채용결격사유

①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7호또는같은 법 제58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③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예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 자격 요건

구분	전공분야	자격요건
전문위원 '나'급 (기간제)	사회복지학·보건학· 행정학 관련 분야	- 해당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 해당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응시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및 자격증 소지 여부는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에 제시된 관련 분야 근무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증명서 제출 건만 인정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

□ 가점 사항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제출한 서류 기준)

○ 아래 가점 사항이 있을 경우 **입사지원서(별지2호서식)에 체크하여 제출**

항목	내 용	부가 점수
법정 가점	• 「국가유공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관련 법령에 따라 각 전형 단계 별 만점의 5~10% * 가장 유리한 1개의 내용에 대해서만 적용함
청년 가점	• 채용공고 시작일('26.11.23.) 기준 「청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 19세이상 34세 이하인 자	각 전형 단계 별 만점의 3%

※ 가점 사항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 인정

※ 법정가점은 채용분야의 채용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단, 예외적으로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라도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가점을 적용한 점수로 평가함. 법정가점과 사회형평가점은 합산할 수 있고, 가점의 총 합계는 전형단계별 만점의 13%를 초과할 수 없음 (법정가점에서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리한 가점만을 적용함)

※ 다만, 서류전형 적부요건에 부적합 판정을 받거나 면접전형에서 불합격 처리된 경우 최종 합격예정자가 채용 예정인원에 미달하더라도 채용자가 없을 수 있음

3 근무조건

○ **신분 : 기간제근로자**(공무원이 아닌 「근로기준법」 적용 근로자)

○ **근무기관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 ~ 1년**(기간제)

구분	내용
근무형태	○ 전일제 근무 ○ 근무요일 : 월~금요일
근무시간	○ 적용기준 : 1일 8시간 ○ 근무시간 : 09:00부터 18:00까지 ○ 휴게시간 : 12:00부터 13:00까지(점심시간)
임금수준	○ 기본급 : 전문위원 '나'급(월 333만원 상당)* * 세전 기준, 건강보험 등 본인부담액 포함 ○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별도 지급 ○ 연장·야간 및 휴일근무는 지급요건 충족 시 별도 지급

◆ 근로조건 및 보수액은 채용 계약시 최종 확정함

◆ 근무내용,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근무요일, 근무장소는 채용기관 운영 여건 및 환경에 따라 부득이하게 조정될 수 있음

◆ 임금수준은 당해 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결정됨에 따라 예산운영 현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공무원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

* 퇴직급여와 관련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아닌 「공무원연금법」 적용

** 국민연금 미가입

◆ 기타 복지후생 등의 사항은「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등 관련 규정에 따름

4 전형단계 및 일정

채용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26. 11. 23.(월) ~ 11. 27.(금)	'26. 11. 30.(월) ~ 12. 3.(목)	'26. 12. 11.(금)	'26. 12. 15.(화) ~ 12. 18.(금) 중	'26. 12. 22.(화) (예정)

◆ 상기 일정은 사전협의 기간 및 기관 사정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

◆ 채용공고, 서류전형 합격자, 면접일정 및 최종합격자 발표는 보건복지부 및 사회보장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니 응시자는 시험 일정을 반드시 홈페이지에서 확인

◆ 최종 합격자 발표 후 제출서류 진위여부 및 신원조회, 채용신체검사서 검증 등을 통해 결격사유 확인 시 합격 취소

◆ 최종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하거나 신원조사 등 결격사유 발생 또는 채용계약 체결 후 중도 퇴사 발생 등을 대비하여 선발 예정 인원보다 1명을 추가로 예비 합격자로 선정

◆ 예비 합격자 임용 유효기한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개월(단, 해당 분야의 차기 채용공고 시 그 공고일 전까지 운영)

5 원서접수 및 제출서류

□ **원서접수 기간 : '26. 11. 30.(월) 09:00 ~ '26. 12. 3.(목) 18:00**

※ 원서 접수(우편(등기) 또는 전자메일)는 원서 접수 기간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 원서 접수 방법 : ① 우편(등기) 접수 또는 ② 전자메일 접수

① 우편(등기) 접수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6층,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사회보장총괄과

* 겉봉에 반드시「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전문위원 지원서」명기

② 전자메일 접수

- osj1101@korea.kr로 송부 후 ☏ 044-202-3716으로 유선통화하여 접수 여부 등 확인 필요

○ 응시자 제출서류(**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대해서만 인정**)

제출시기	제출서류
원서접수 시	<공통서류> ○ 응시원서 1부(별지서식 제1호) ○ 입사지원서 1부(별지서식 제2호) 및 자기소개서 각 1부(별지서식 제3호) ○ 대학교 이상 졸업증명서(학위증명서) 각 1부 ※ 응시요건(학위 소지 여부) 및 전형위원 제척 확인용으로 전형위원에게 학교명 등이 제공되지 않음 ○ 응시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별지서식 제4호)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서식 제5호) <추가서류 - 해당자에 한함> ○ 경력(재직)증명서, 자격증 증명서 각 1부 ○ 가점 증빙서류 각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남성의 병역사항, 가점대상자 신원검증용/출신지 미포함) ○ 관련 분야 수상실적

※ 응시자 제출서류는 증빙서류 검증 과정에서 필요 시 일부 추가 요구 등 변동 가능

6 채용방법

□ 서류전형

○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 단, 응시인원이 채용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가점수에 가감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 으로 채용예정 인원의 3배수 이내를 서류합격자로 선발

* 합격자 배수를 초과하여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 전원 합격 처리

○ 자기소개서 및 직무연관성(50), 관련분야 전문성(50)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

○ 공익성(10), 전문성(30), 혁신 및 창의성(20), 의사전달능력(20), 품행 및 성실성(20)을 5개 평가등급으로 나누어 종합적 평가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경우 법정가점을 받은 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고, 법정가점을 적용하였음에도 동점자가 있을 경우 서류전형 고득점자순으로 결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면접전형 점수에 가감점수를 합산한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부적합"로 평정하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같은 평정요소를 "부적합"로 평정했을 때

□ 최종합격자 발표

○ 보건복지부 및 사회보장위원회 홈페이지(http://www.mohw.go.kr, http://www.ssc.go.kr) 공고 및 개별 통보

○ 최종합격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 발생 또는 채용계약 체결 후 중도 퇴사 발생 등을 대비하여 채용 예정 인원보다 1명을 추가로 예비 합격자 선정

- 예비합격자 임용 유효기한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개월 (단, 해당 분야의 차기 채용 공고 시 그 공고일 전까지 운영)

7 유의사항

□ 채용서류 반환 관련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 내 별지의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 다만, 채용절차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

○ 응시자가 채용서류 반환청구를 한 경우에는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채용서류를 발송하거나 전달하여야 함

○ 청구하지 않은 채용서류는 청구기한 이후「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

※ 다만, 인사감사 등 채용 절차의 사후관리를 위한 지원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주소에 관한 정보는 지원자의 사전동의를 받아 보관

□ 채용비리 관련

○ 채용비리 관련 부정합격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결정을 거쳐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채용예정자는 부정합격 시 관련 규정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확인서(공정채용 확인서)를 제출

○ 채용비리 피해자 발생 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근로자 등 공정채용 기준」 제29조(채용비리 피해자 구제)에 따른 피해자 구제 조치 실시

□ 기타 유의사항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작성시 직·간접적으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가족관계, 개인신상 등 직무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을 기술하지 않도록 유의(기재 시 블라인드 처리 및 감점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입사지원서 기재 착오 및 누락, 연락 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합격 또는 합격 취소(전형 응시 불가)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지원서 기재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요구 및 사실 여부 조회를 할 수 있음

○ 제출된 증빙서류는 응시원서 허위기재여부 확인을 위해서 활용되며, 심사에 불필요한 자료는 심사위원에게 일절 제공되지 않음

○ 응시원서에 기재한 연락처(휴대전화, 이메일 등), 생년월일 등은 블라인드 처리하여 심사위원에게 제공됨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등을 통하여 채용하기에 부적절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계약체결 후에라도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근로계약 포기, 합격 취소, 결격사유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임용되지 못하는 경우 면접점수 차상위자를 예비 합격자로 선발할 예정

○ 입사지원서는 접수 마감기한('26.12.3.(목) 18시)까지 정상적으로 제출된 경우에만 인정

○ 면접전형 참여시 신분증 원본* 지참 (미지참 시 응시 불가)

*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사진포함, 유효기간 내)

○ 본 채용 공고는 기관 사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변경 및 안내 예정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사무국 사회보장총괄과 채용담당자에게(☎ 044-202-3716)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응시원서 1부.
2. 입사지원서 1부.
3. 자기소개서 1부.
4. 응시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5.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6.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7. 공정채용확인서 1부.
8.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
9. 취업제한 체크리스트 1부
10.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1부. 끝.

<별지 제1호> 응시원서

응 시 원 서

본인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소속 전문위원(기간제) 채용 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 법령에 의거 당해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2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응시자 (서명)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table>
<tr><td colspan="3">※ 응시번호</td><td>< 미기재 ></td><td>응시직급
및 구분</td><td colspan="2">전문위원 ('나'급)
기간제 근로자</td></tr>
<tr><td rowspan="5">인
적
사
항</td><td rowspan="2">성
명</td><td>한글</td><td></td><td rowspan="2">생일</td><td colspan="2" rowspan="2">(생년은 미기재)</td></tr>
<tr><td>한자</td><td></td></tr>
<tr><td colspan="2">현주소</td><td colspan="4">(우:)</td></tr>
<tr><td colspan="2">E-mail</td><td colspan="2"></td><td rowspan="2">복수
국적</td><td rowspan="2"></td></tr>
<tr><td colspan="2">전화
(휴대폰)</td><td colspan="2"></td></tr>
</table>

응시원서 작성요령

1. 응시원서는 반드시 소정 양식을 다운받아 **한글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2.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된다.

3. 『응시원서』는 아래의 **< 작성요령 >** 에 따라 작성한다.

< 작 성 요 령 >

① 「※응시번호」 : 응시자가 기재하지 않음

②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③ 성명·생년월일·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히 기재함

④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을 기재, 복수국적자가 아닐 경우 '해당없음' 기재

<별지 제2호> 입사지원서

입사지원서

가. 공통사항					
※ 응시번호	< 미기재 >	응시직급	전문위원 '나'급	성명	(한글) (한자)
주 소					
병 역	(군 별)		(계 급)		
전화번호	(자택번호) (H.P)		전자우편		
가점사항 여부	법정가점 (" *가점내용 기입* " □ 5%, □ 10%) * 공고문 가점사항 참고				
	청년가점 (□ 3%)				

나. 응시자격 (해당되는 요건만 기재)				
학력	기 간	학위종류	전공분야	구분
		고등학교		졸업/재학/수료/중퇴
		대학교		졸업/재학/수료/중퇴
		대학원		졸업/재학/수료/중퇴
경력	근무기관명	근무기간	직위	담당업무
자격	자 격			
	자격명	취득일자	발급기관	

기타 수상 기록 등	제 목	내 용

지원서 상의 모든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지원자 (인)

* 3장 이내로 작성할 것.
* 반드시 증빙이 가능한 사항만 작성할 것(증빙불가 시 탈락 처리될 수 있음).

<별지 제3호> 자기소개서

자 기 소 개 서

성 명 : OOO

※ 응모자가 자유롭게 기술(A4용지 2매 이내)

- 자기소개, 지원하게 된 동기, 근무·연구활동 실적, 현재까지 달성한 업적, 장점, 능력 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유롭게 기술

- 글씨크기 : 13, 줄간격 160%, 글씨체 : 휴먼명조, 글자색 : 검정

- 편집용지 좌우여백은 각각 20mm, 상·하·머리말·꼬리말은 각각 12mm로 작성

※ 유의사항 : 작성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 . .

작 성 자 : O O O (서명)

<별지 제4호> 응시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응시자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보건복지부는 전문위원(기간제)채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응시번호, 성명, 응시직급, 주소,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자격증 정보(자격증명, 취득일, 자격검정기관), 병역사항(군필여부), 경력정보, 전자메일, 학력정보 등	○본인확인 ○신규채용 심사 ○임용시 경력산정 등 보수수준 심사 ○인사・노무관리 ○인사감사 등 채용절차의 사후관리	· 미채용자 : 180일 · 채용자 : 퇴직후 3년까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지침에 따라 채용시험과 관련된 경우 10년, 임용과 관련된 경우 30년

※ 응시자는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채용 및 선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필수] 민감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장애인등록증, 북한이탈주민확인서, 수급자증명서,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정보	○본인확인 ○신규채용 심사 ○기타 인사・노무관리	· 미채용자 : 180일 · 채용자 : 퇴직후 3년까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지침에 따라 채용시험과 관련된 경우 10년, 임용과 관련된 경우 30년

※ 응시자는 위의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채용 및 선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필수] 복수국적자, 경력, 자격요건 확인 등을 위한 동의서 효력인정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응시요건, 증빙자료 등에 대한 진위여부를 관련 기관에 조회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 자료 확인서를 발급하며, 「개인정보 보호법」등에 보호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자료를 동법 제17조 등에 따라 인사담당 업무관계자에게 제공·공개·활용합니다.

제공 항목	제공받는 자	제공 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복수국적 여부 조회에 필요한 사항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사무소)	근로자 채용 및 관리	정보처리 목적 달성시까지
자격증, 경력 등 응시요건 충족 및 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항	관련 개인정보 보유기관	근로자 채용 및 관리	정보처리 목적 달성시까지

※ 응시자는 위의 개인정보의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채용 및 선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본이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동의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별지 제5호>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본인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위원회 소속 전문위원(‘나’급, 기간제) 채용 시험**’ 응시자로서, 보건복지부가 본인이 제출한 증명서 등 각종 제출 자료의 진위 여부를 확인·검증하는 데 동의하며, 이에 본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자료를 동법 제 15조 등에 따라 채용 담당 업무관계자에게 제공 및 공개ㆍ활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 등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 반드시 자필서명 또는 날인 요망

보건복지부 장관 귀하

<별지 제6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반드시 자필 서명 후 제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이용기관 명칭 : 보건복지부

2. 이용사무(이용목적) : 전문위원(기간제) 채용심사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 결격사유 유무 정보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 년 월 일

동의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보건복지부 장관 귀하

<별지 제7호> 공정채용확인서 **※반드시 자필 서명 후 제출**

공 정 채 용 확 인 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제10조의 2에 따라 기관 종사자의 친인척 채용 등 불공정 채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지원자 본인의 확인을 받고자 하오니, 사실 그대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 인 사 항	해당여부	
	있음	없음
1. 본인은 채용 과정에서 친·인척이나 지인을 통하여 채용을 청탁한 사실이 있습니까?	□	□
2. 본인의 친·인척이 보건복지부 혹은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에 근무(퇴직 포함)하고 있습니까?	□	□
3. (친인척 관계가 있는 경우) 본인과 ( )촌 이내이며, ( )에 근무(한) (성명:)입니다.	□	□
4. 친·인척 관계가 있다면, 해당 직원이 본인의 채용과 관련하여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생각합니까?	□	□

상기 사항은 모두 사실이며, **추후 채용비리 사항이 확인되었을 경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합격 취소, 임용 취소 및 면직 처리됨**을 확인합니다. 또한 본 확인서 작성 시에 인지하지 못한 친인척 관계가 추후 밝혀질 경우 **채용비리 해당 여부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합격 취소, 임용 취소 및 면직 처리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성명: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별지 제8호>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반드시 자필 서명 후 제출**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본인은 OOOO 공무직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표준기준제25조(채용결격사유)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채용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 및 동의합니다.

①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7호 또는 같은 법 제58조의2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③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2026 년 월 일

채용예정자: (서명)

보건복지부 장관 귀하

<별지 제9호> 취업제한 체크리스트 **※반드시 자필 서명 후 제출**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1. **공직자**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해당 □ 비해당 □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여비 부당수령: 해당	해당 □ 비해당 □
3-1. **해당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사실이 있는지	해당 □ 비해당 □
3-2. 위 **퇴직일**(당연퇴직·파면·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 1호)	해당 □ 비해당 □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해당 □ 비해당 □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5년 내)	해당 □ 비해당 □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해당 □ 비해당 □
1, 2, 3-1, 3-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	해당 □
1, 2, 4-1, 4-2, 4-3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	해당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

20 년 월 일

생년월일 . . . 지 원 자 (서명)

년 월 일

<별지 제10호>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26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